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2020. 9. 9.)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116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8월 25일(화)
- 라. 회부일자: 2020년 8월 26일(수)

### 2. 제출사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내용

##### 1) 위탁운영 시설현황

구 분	망원나들목 체육관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위 치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B동 옆)			망원동 460-5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A동 상부)
면 적	995.79㎡ (건물 연면적)			2,040㎡ (15m × 136m)
주요시설	1층	758.50㎡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사무실	테니스장(4코트), 조명탑(4개) 관리동(컨테이너 1동)
	2층	163.79㎡	헬스장, 샤워장, 탈의실	
	3층	73.50㎡	기계실	

## 2) 위탁기간

- 망원나들목 체육관 : '20. 11. 1. ~ '22. 12. 31. (2년 2개월)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20. 11. 1. ~ '21. 12. 31. (1년 2개월)

## 3) 위탁사무 범위: 망원나들목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시설운영: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설대관, 강사채용, 회원관리, 수강료 징수, 청소 등
- 시설관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 관리

## 4) 소요예산

- 망원나들목 체육관: '21년 400백만원
  - 연간 운영수지 적자 예상되어 사용료, 대관료 등 구 세입으로 귀속처리 후, 수탁기관에 세출예산(민간이전) 편성·지출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없음
  - 연간 운영수지 흑자 예상되어 수탁기관으로부터 매년 위탁료 징수

## 5) 수탁기관 선정방법: 시설별 공개 모집

## 6) 수탁기관 선정주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 구성)

## 나. 추진 일정

- 1) 2020. 9. : 민간위탁(수탁기관 선정)계획 방침 수립
- 2) 2020. 9. ~ 10.: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3) 2020. 10.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 4) 2020. 11. 1. : 시설 개관(운영 예정)

## 4.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5. 검토보고

- 동 안전은 2020년 7월 준공한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체육관과 테니스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시설을 위탁하고자 함.
-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사유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동 체육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도 부합하고 있고 또한 위탁기간은 망원나들목 체육관이 2년 2개월, 테니스장이 1년 2개월로 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인 3년 이내를 준수하는 등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며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짐.
- 다만, 기존 민간위탁 사무를 살펴보면 수탁기관 선정 시 특정단체가 반복적, 독점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개선·보완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다양한 수탁기관의 공모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관련 예산의 절약은 물론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4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참고 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